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곽동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7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11.

발의의원 : 곽동환 의원,

김은영 의원, 전홍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지원시책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추가(안 제4조 제1항)

나.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관한 지원의 범위 추가(안 제5조 제1항)

다. 수당 및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 규정(안 제11조~ 제12조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대구광역시”를 “조례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달성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실시할”을 “할”로 한다.

### 3. 직업훈련,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종전의 제4조)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달성군”을 “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6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

제8조제2항 중 “때에는” 을 “때는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때에는” 을 “때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정되는 경우에는” 을 “인정될 때는” 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(이하 “지원단체” 라 한다)” 를 “지원단체” 로, “에 대하여 경비 또는 활동을” 을 “에게 그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위탁하는 경우에” 를 “위탁할 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하는 경우에” 를 “운영할 때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3조(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)</b> ① <u>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2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조(지원대상)</b> 이 조례에 의한 지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 조례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-----</p> <p>-----.</p> <p><b>제4조(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)</b> ①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<u>직업훈련,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<u>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-----</p> <p>-----할 -----.</p> <p><b>제3조(지원대상)</b> ----- 따른</p>

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.

제5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

-----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-----

제5조(지원의 범위) ① 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때는 -----

제9조(회의) ① -----

----- 때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인정될 때는 -----

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단체 등의 지원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(이하 “지원단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단체 등의 지원) ① -----  
-----  
지원단체에게 그 지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위탁할 때 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운영할 때 -----  
-----  
-----.

## 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2023.3.28 일부 개정 2023.3.28 시행)

제4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·교육·취업·주거·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, 2021. 1. 5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·청소년·청년·여성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(2022.10.28 전부개정 2022.10.28 시행)

제14조(수당 등)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참석수당: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,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에 게 지급. 이 경우 재난상황, 시급한 안전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(화상회의 등)를 포함한다.

2. 심사수당

가.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전 처리.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나. 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서면·전자우편 등에 의한 심사

3. 실비: 교통비, 급량비, 숙박비, 여비 등

